	보 도 자 료	
	배포 일시	2021. 4. 22.(목) 총 2매 (본문1)
담당 부서	진도항로표지 사무소	담 당 자	• 소장 김동식, 담당 장지형 • ☎ (061) 542-9661
보 도 일 시		2021년 4월 23일(금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 · 방송 · 인터넷은 4. 22.(목) 15:00 이후 보도 가능	

목포해양수산청, 낚시철 대비 항로표지 안전이용 계도

목포지방해양수산청(청장 김성수)은 진도항로표지사무소 관할 구역 내 낚시어선 등을 대상으로 4월 26일부터 한 달 동안 “해양 항로표지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계도 활동”을 실시한다고 밝혔다.

최근 2년동안 낚시어선이 항로표지에 선박을 연결하여 낚시하는 등으로 항로표지 시설물을 훼손하는 등 해상교통안전을 저해하는 위반사례가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있다.

목포해수청에서는 본격적인 낚시철이 다가옴에 따라 낚시어선 선주 등을 대상으로 안전한 낚시활동 및 항로표지의 안전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계도활동을 벌일 계획이며, 관련법에 따르면 항로표지에 무단으로 선박을 연결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.

진도항로표지사무소 관계자는 “운항 선박의 길잡이 역할을 하는 안전시설인 항로표지 중요성에 대한 인식제고를 통해 사고를 예방하고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다하겠다.”고 밝혔다.

OPEN	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진도항로표지사무소 담당 장지형 주무관(☎ 061-542-9661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붙 임 | 계도 활동을 위한 현수막 및 포스터 시안

항로표지에 선박을 계류하여 낚시하는 행위는 위법입니다.
항로표지법 제34조 제2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해양수산부 목포지방해양수산청 061) 542-9664

현수막 시안



포스터 시안